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2019. 5. 15] 조례 제3580호]

일부개정 2020. 7. 14 조례 제3669호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3683호
일부개정 2021. 3. 9 조례 제3715호
일부개정 2021. 5. 7 조례 제3727호
일부개정 2023. 4. 25 조례 제38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7, 2023. 4. 25>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보,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및 자문, 교육
2. 생산제품의 판매·소비촉진
3.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련단체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하고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1. 특례보증 융자금: 최대 3천만원

2. 보전 범위: 대출금리의 범위 내에서 최대 3%

3. 기간: 최장 3년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1. 특례보증 융자금: 최대 5천만원

2. 보전 범위: 대출금리의 범위 내에서 최대 5%

3. 기간: 최장 5년

③ 이자상환기간 및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과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의2(긴급자금 지원) ① 감염병, 재난 등의 국가긴급사태가 발생하여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긴급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명령 등에 따른 업종별 영업제한의 정도

2. 행정명령의 발령 기간

3. 다른 정책지원금의 수령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긴급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7>

[본조신설 2021. 3. 9]

제8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7조의 경우

가. 군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군에 사업장을 등록하였을 것

2. 제6조의 경우

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군에 사업장을 등록하였을 것

3. 제7조의2의 경우

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을 등록하였을 것

[전문개정 2021. 5. 7]

제9조(지원의 중지와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 9. 29>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연천군 외의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6. 소상공인이 제6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제7조에 다른 이차보전금이 증가한 경우

② 감염병, 재난 등의 국가긴급사태가 발생하여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천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연천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대상자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7. 14 조례 제3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조례 제3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9 조례 제3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부칙 <2021. 5. 7 조례 제3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4. 25 조례 제3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